

## 【 4 】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01. 11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1. 개정이유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분리하고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시행(2000.10.1)에 따라 불일치 하는 관련 자구를 현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은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로 함
- 나.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영세민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함(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 다. 용자한도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응자금(이하 “응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자금의 조성) 응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금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응자대상) ①응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근면, 성실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응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한한다.

1.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4.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응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응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응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① 제3조의 응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응자를 실시 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학자금 응자는 년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응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응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응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응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응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며 거치 기간 만료 후 년 1회씩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은 졸업 후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응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응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응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융자금 회수)** ①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 융자금, 자금 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응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때
3.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60일 내의 기간을 주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회수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 반환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관련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중 생활안정 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

**개정구분** : 전문개정

**개정이유**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분리하고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2000.10.1)에 따라 불일치하는 관련 자구를 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조례제명은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로 함.
- 나.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영세민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함(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 다. 용자한도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1. 12. 31 ~ 2002. 1. 10(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현행)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1995. 10. 5]  
[조례 제1544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응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응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자금
3.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 3 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응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응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 제9면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 6 조(용자금의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기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대상자 선점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 8 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 9 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11 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응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말 현재)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응자의 금지) 응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응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응자할 수 없다.

제16조(응자금의 반환) 군수는 응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응자금의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응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응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응자금의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응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응자금을 회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 칙 (1995. 10. 5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